

#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정태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59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1일

발 의 자 : 김정태, 고병국, 권영희,  
김경우, 김태호, 문병훈,  
여 명, 이세열, 임종국,  
장상기, 채유미, 최정순  
의원(12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 상수도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, 2019년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이어 2020년 유충 사건으로 음용률이 저하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서울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임.  
이에 급수과정에서 오염된 수돗물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서울시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수질사고를 조기에 대응하고 서울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급수관의 오염된 수돗물 조기 차단을 위한 규정을 마련함(안 제40조의4)

## 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타 : 신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의4제2항 중 “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”를 “지도·감독하고, 오염된 수돗물 공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수질기준 초과지점에 자동드레인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0조의4(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등 조치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세척등 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<u>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40조의4(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등 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/p> <p><u>지도·감독하고, 오염된 수돗물 공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수질기준 초과지점에 자동드레인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문서번호	2021081000000012
------	------------------

## 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운영위원회	담당 :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
접수일 : 2021.08.10	
회신일 : 2021.08.11	내용문의 : 02-2180-7954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
예산정책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## 1. 비용발생 요인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0조의4(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 등의 조치)제2항 개정에 따라 수질기준 초과지점에 자동드레인 설치 매입 비용이 발생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
- 안 제40조의4(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 등의 조치)제2항 개정에 따라 수질기준 초과지점에 자동드레인 설치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설치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추계가 곤란함

※ 2021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,799백만원의 예산(국비50:시비50)을 투입하여 17개소에 자동드레인을 설치하여 1개소당 평균 설치비용은 105,823천원으로 추산됨

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추계세제팀장 이원상

예산분석관 박주용

☎ 02-2180-7954

e-mail : pjooyong@seoul.go.kr